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공고

무주택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」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. 7. 26.

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

1.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

- (거주지)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자
※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
- (연 령)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
- (소 득) 연소득 5천만원이하(단,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)
- (주 택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

○ 신청기간 : 2023. 7. 26. ~ 계속

○ 지원내용

- 2023. 1. 1.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(최대 30만원)
(보증기관) ①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②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③SGI서울보증

-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(최대 30만원)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2. 사업신청

- 신청인 : 전세계약서상 임차인(원칙)
(단,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* 허용)
* 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
- 신청제외자
 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등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※ 2020. 8.18.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「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」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
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접수방법 : 해당 읍·면 행정복지센터
- 제출서류
 1.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(홈페이지 첨부)
 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(보증료, 전세보증금 확인)
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※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
 3. 임대차계약서 사본
 4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※ 인터넷등기소,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
 5.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7년 이내 여부)
 6. 본인명의 통장 사본
 7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'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' 제출
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※ 홈택스, 세무서 발급

3.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

- (심사 기간) 30일 이내(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)
- (임차보증금)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
- (연소득)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
※ 신청일이 7.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
- (보증가입일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
- (보증료 납부)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
- (주택소유 여부) 국토부(주택기금과)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 소유 여부 확인
- (제외 여부)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<지원제외 대상 확인방법>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- ☞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- ☞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
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- (결과 통지)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'적합'으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'부적합'으로 서면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

4. 유의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,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라며,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(1599-0001)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택과(052-204-205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지원신청서 1부
- 2. 서약서 1부. 끝.

서식1

보증료 지원 신청서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

(2쪽 중 1쪽)

처리기간	별도안내
------	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휴대전화
	주소	전자우편	

자격 요건	주택소유여부 ¹⁾	(○, ×)	신혼부부 여부 ²⁾ (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)	(○, ×)
	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³⁾	(○, ×)	보증기관 ³⁾	
	보증가입일자 ³⁾	납입보증료 ⁴⁾	원
	임차보증금	원	연소득 ⁵⁾	원

지급계좌 ⁶⁾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비고

통지방법	[] 서면 [] 전자우편(E-mail) []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[] 기타 ()
------	--

작성방법

- 1)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소유 여부 기재
(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)
- 2)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
- 3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
- 4)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
- 5)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
- 6)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서식2

서약서

'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 서약서

'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' 과 관련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. . . .

성명 (서명)